

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(제26조제2항 관련)

1. 건강관리

- 가.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(이하 이 호에서 “건강진단”이라 한다)을 하여야 하며,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나.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.

2. 급식위생관리(노인복지관의 경우에 한정한다)

- 가. 시설의 장은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해야 한다. 다만,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을 해야 한다.
- 나. 전염성질환, 고름형성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.
- 다. 시설에서 사용되는 먹는물의 경우에는 「수도법」 및 「먹는물관리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라. 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.

3. 운영규정

- 가. 노인여가복지시설(이하 이 표에서 “시설”이라 한다)의 장은 그 시설의 운영방법, 이용자의 준수사항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(이하 이 표에서 “운영규정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나.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의 운영규정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) 이용정원 등에 관한 사항
  - 2)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(계약기간,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
  - 3)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  - 4)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  - 5)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
  - 6)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·면책범위에 관한 사항
  - 7)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4. 회 계

- 가. 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.
- 나. 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그 밖의 기부금품은 이를

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.

5. 장부 등의 비치

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.

- 가.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
- 나.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다. 시설운영(교육)일지
- 라. 이용노인(회원)명부
- 마. 예산서 및 결산서
- 바. 수입·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
- 사.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
- 아.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
- 자. 정관(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) 및 관계질의서류

6. 사업의 실시

시설의 장은 시설종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.

시 설 별	시 설 별 운 영 기 준
노인복지관	<p>가.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·수행해야 한다.</p> <p>나. 다음의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되 이용대상 노인의 실정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를 가감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·추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상담·지도 노인의 생활·주택·신상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방·치료에 관한 건강상담 및 지도</li> <li>2) 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</li> <li>3)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되, 물리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계약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.</li> <li>4) 교양강좌 등의 실시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</li> </ol> <p>다.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병설·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</p>

	라. 지역 특성에 따라 야간이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.
경로당	이용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노인교실	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